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72 발의연월일: 2022. 2. 14.

발 의 자: 강준현·고영인·김병주

김회재 · 문정복 · 송옥주

이장섭 · 임종성 · 임호선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,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사무기구를 두지않고 그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로 인해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 부재로 위원 회 운영의 안정성 부족, 외부 대응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, 사무국이 없어 사무처리 혼선,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독 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 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6조 삭제).

법률 제 호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	<u><삭 제></u>
위원회에 대한 특례) ① 세종	
<u>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</u>	
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및 제20	
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	
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	
<u>수 있다.</u>	
②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	
<u>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</u>	
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	
<u>종</u> 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	
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	
에서 처리한다.	